

의안번호	2203325
의 퇴 인	조계원 의원
회 답 일	2024.09.11.
추 계 번호	24C330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5억 4,980만원 (연평균 3.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안 제21조의2 (지역협업위원회)	172.2	344.4	344.4	344.4	344.4	1,549.8	310

주: 1) 2025년은 법 시행일을 고려하여 6개월분의 재정소요를 추계함

2) 시도협업위원회 운영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하였으며, 대학을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수와 동일한 숫자의 시군구협업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시·도별 및 시·군·구(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1조의2 (지역협업위원회)	(제1항)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소속으로 시·도에 시도협업위원회(이하 “시도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에 시군구협업위원회(이하 “시군구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의무규정
		(제2항) 시도협업위원회 및 시군구협업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지역협업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등교육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및 산업계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군구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협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항) 그 밖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 (대학과 지역의 협업)	×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기존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었던 “전담기관”을 시·도별 및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 별로 지정하여야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재량’ 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 향후 출연금이 지원될지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한 예상이 어려움 ¹⁾
2	안 제21조의2 (지역협업위원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될 시군구협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은 “시·도와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 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담기관 소속”으로 시도협업위원회와 시군구협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시도협업위원회) '24년 기준 비수도권²⁾ 시·도에는 모두 전담기관이 지

1) 참고로,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전담기관 중 광주·전남, 울산·경남 등 6개 전담기관은 24년 말 운영종료 예정이며, 부산과 경북지역의 전담기관에 대한 국비지원도 관련 사업이 일몰 종료되는 시까지만 국비 지원이 실시될 예정임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 법에서의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며, 이때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정·운영되고 있으므로³⁾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함⁴⁾

- (시군구협업위원회) 개정안에 따라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시·군·구별로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전담기관 소속으로 시군구협업위원회를 두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시군구협업위원회는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시·군·구별로 지정된 전담기관 소속으로 설치되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대학알리미'의 '24년 3월 기준 학교개황'에서 추출한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 소재 시·군·구 수와 동일하게 시군구협업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이때의 시·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함
- 시군구협업위원회의 위원수 등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소요비용에 대한 추정을 위하여 본 추계서에서는 기 운영되고 있는 시도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및 회의횟수 등을 준용하여 추계함
- 소요비용으로는 시군구협업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추계하며 기타 회의개최에 부수되는 비용 등 다른 비용은 추계하지 않음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025년은 하반기 6개월에 대하여 추계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별로 시군구협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15억 4,9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의 시군구협업위원회는 대학이 소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수와 동일한 숫자인 82개가 설치되는 것으로 함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방대학'의 정의⁵⁾를

시, 경기도 이므로, 이하에서는 해당 3개 시·도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술함

- 3) 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세종, 광주·전남 등 일부 시도협업위원회가 인근 시·도와 연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 4)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전국 21개(소)이며, '24년에 운영이 종료되는 6개 기관을 제외한 15개 기관은 경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시·도별로 1개 기관씩(경북의 경우 2개 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시도협업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함

고려하여, 서울·경기·인천외 지역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본교를 기준으로 하였음⁶⁾

-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시군구협업위원회는 시도협업위원회를 준용하여 추계하며, 본 추계서에서는 7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15명의 위원 이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서에서는 '24년 6월 기준 광주·지역협업위원회와 대구·경북 지역협의회의 위원수를 준용하여 시군구협업위원회의 위원수를 총 15명으로 하며, 개정안에 따른 위원이 공공기관의 장 및 산업계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수는 7명으로 가정함
 - 연간회의 횟수는 시도협업위원회의 '23년 연간회의 횟수⁷⁾를 고려하여 연간 4회 개최되는 것으로 하며,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은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고려하여 1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협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따른 재정소요는 2025년 1.7억원, 2026~2029년 연간 3.4억원 등 총 15억 4,98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 2025년(6개월) : 7명(민간위원수)×15만원×2회×82개 시군구=1억 7,220만원
 - 2026~2029년(연간) : 7명(민간위원수)×15만원×4회×82개 시군구
=3억 4,440만원

[표 2] 시군구협업위원회 설치·운영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시군구 협업위원회	172.2	344.4	344.4	344.4	344.4	1,549.8

주: 1) 2025년은 법 시행일을 고려하여 6개월분의 재정소요를 추계함

2) 시도협업위원회 운영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하였으며, 대학을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수와 동일한 숫자의 시군구협업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대학알리미 학교현황(2024.03.05.)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 학교와 캠퍼스 및 분교, 대학원을 제외하였고, 특별법 법인(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및 국립(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별설치령에 의한 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와 각종학교 및 사이버대학 등을 제외하였음

7) 강원 지역협업위원회 4회, 광주·전남 지역협업위원회 5회, 대구·경북 지역협업위원회 4회, 울산·경남 지역협업위원회 4회, 제주 지역협업위원회 3회 등을 고려하였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